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100317 <http://junco1997.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8. 8. 18. jc506@junco21.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 05. 14

[준코노래타운]

정 보 공 개 서

[(주)준코]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주)준코]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59, 3층 301호(길동, 대진빌딩)]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70-4543-9293]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507-883-827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주)준코 개발부]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5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7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21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22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8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0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42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5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47

※ 별첨서류

[별첨1] 필수공급상품

[별첨2] 메뉴별 권장가격

[별첨3] 가맹금예치신청서

[별첨4]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별첨5]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증

[별첨6]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준코	준코노래타운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59, 3층 301호(길동, 대진빌딩)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6. 9. 7.	2006. 9. 7.	김원길 / 장원동	070-4543-9293	0507-883-8277
	법인등록번호	230111-0125425	사업자등록번호	212-81-7733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김원길	준코노래타운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59, 3층 301호(길동, 대진빌딩)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8년 3월 ~ 현재		김원길 / 장원동	070-4543-9293	0507-883-8277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장원동	준코노래타운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59, 3층 301호(길동, 대진빌딩)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년 5월 ~ 현재		김원길 / 장원동	070-4543-9293	0507-883-8277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사내이사)	김달호	준코노래타운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59, 3층 301호(길동, 대진빌딩)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년 5월 ~ 현재		김원길 / 장원동	070-4543-9293	0507-883-8277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감사)	김성훈	준코노래타운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59, 3층 301호(길동, 대진빌딩)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2년 3월 ~ 현재		김원길 / 장원동	070-4543-9293	0507-883-8277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준코노래타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준코노래타운	-
상 호	준코노래타운 00점	-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157384호 등록번호: 제0209093호
광 고	해당없음	-
그 밖의 영업표지		등록번호: 제0057131호
		등록번호: 제0305764호 등록번호: 제0305765호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2,372,494	-16,502,638	28,875,132	35,559,113	4,683,999	5,572,531
2023년	11,382,705	-11,831,450	23,214,155	41,771,206	4,507,837	3,592,784
2024년	10,152,173	-6,202,326	16,354,500	43,891,270	5,714,407	5,466,211

그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가맹사업(준코노래타운) 외 부동산 임대업을 2009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당사의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인테리어 공사, 집기, 비품 등의 상품등의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대가를 받는 수수료에 의한 매출액, 가맹점사업자로부터의 위탁경영 수수료에 의한 매출액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월정로열티에 의한 매출액과 부동산 임대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에 의한 매출액으로 구성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근 3년간)

관련 여부	이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성훈	감사	2012.03.20.~현재	(주)준코 등기감사	경영 감사 관리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달호	이사	2021.05.21~현재	(주) 준코 사내이사	경영 관리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원길	대표이사	2018.3.20~현재	(주) 준코 대표이사	경영 관리
가맹사업 관련임원	장원동	대표이사	2022.5.1~현재	(주) 준코 대표이사	경영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3	1	2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른 가맹사업 경영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여부(일자)	등록 및 출원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서비스표 (제42류)	2008.11.04. 출원 2009.05.27. 등록	출원 제41-0009255호 출원 제51-0004673호 등록 제41-0057131호	(주)준코	2029. 10. 18.
	서비스표 (제41류)	2007.01.12. 출원 2007.12.03. 등록	출원 제41-0001057호 등록 제41-0157384호	(주)준코	2027. 12. 03.
	서비스표 (제43류)	2009.10.20. 출원 2011.04.11. 등록	출원 제41-0025193호 등록 제41-0209093호	(주)준코	2031. 04. 1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준코노래타운] 가맹사업 현황

1. [준코노래타운]을 시작한 날: 2001년 9월 1일

2. [준코노래타운]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다인스	준코노래타운	김성훈	2006.09.07.~2011.04.07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234-6번지 4층
(주)준코이티엠	준코노래타운	김성훈	2011.04.07.~2012.03.19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341-6
(주)준코이티엠	준코노래타운	신종열	2012.03.20.~2013.03.03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36 상가동 3층 301호
(주)준코이티엠	준코노래타운	신종열	2013.03.04.~2013.04.18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1-1 알앤씨빌딩 501호
(주)준코이티엠	준코노래타운	이영진	2013.04.18.~2014.04.0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1-1 알앤씨빌딩 501호
(주)준코이티엠	준코노래타운	강민석	2014.04.01.~2015.01.08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1-1 알앤씨빌딩 501호
(주)준코이티엠	준코노래타운	양세진	2015.01.08.~2015.02.24.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144, 3층(양재동, 서방빌딩)
(주)준코이티엠	준코노래타운	상보규	2015.02.24.~2015.03.20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144, 3층(양재동, 서방빌딩)
(주)준코이티엠	준코노래타운	류경열	2015.03.20.~2015.07.0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144, 3층(양재동, 서방빌딩)
(주)준코	준코노래타운	류경열	2015.07.02.~2016.02.03.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144, 3층(양재동, 서방빌딩)
(주)준코	준코노래타운	류경열	2016.02.04.~2016.03.09.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35, 5층(방이동)
(주)준코	준코노래타운	양세진	2016.03.09.~2017.01.05.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35, 5층(방이동)
(주)준코	준코노래타운	남지우	2017.01.05.~2018.02.09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35, 5층(방이동)
(주)준코	준코노래타운	남지우	2018.02.09.~2018.02.28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86, 2층
(주)준코	준코노래타운	김원길	2018.03.20.~2020.02.02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86, 2층
(주)준코	준코노래타운	김원길	2020.02.03.~현재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459, 301호
(주)준코	준코노래타운	장원동	2022.05.01.~현재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459, 301호

3. [준코노래타운] 업종

영업표지	업종	
준코노래타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주점	일반주점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준코노래타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09	46	63	117	54	63	122	60	62
서울	23	7	16	23	7	16	24	8	16
부산	8	1	7	10	3	7	11	4	7
대구	3	1	2	4	2	2	5	3	2
인천	5	4	1	6	5	1	6	5	1
광주	1	0	1	1	0	1	1	0	1
대전	1	0	1	1	0	1	1	0	1
세종	0	0	0	0	0	0	0	0	0
울산	1	1	0	1	1	0	1	1	0
경기	34	22	12	34	22	12	36	24	12
강원	4	4	0	5	5	0	5	5	0
충북	4	0	4	4	0	4	4	0	4
충남	3	1	2	3	1	2	4	2	2
전북	2	0	2	2	0	2	1	0	1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4	0	4	6	2	4	6	2	4
경남	11	5	6	12	6	6	12	6	6
제주	5	0	5	5	0	5	5	0	5

5. 최근 3년간 [준코노래타운]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증감
2022	35	21	0	10	0	46	11
2023	46	14	6	0	0	54	8
2024	54	7	1	0	0	60	6

6. [준코노래타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준코노래타운]외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준코 노래타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위 매출액은 가맹점에 설치된 POS에 따른 것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의 POS 미가입이나 기입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실제 매출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가맹점수의 ()는 6개월 미만 운영점포 숫자입니다.

8. 준코노래타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준코노래타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60	336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준코노래타운]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준코노래타운]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9쪽을 참조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53,688,785	53,688,785	0	
(비공개)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0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암사역 지점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2-8	02-2197-8943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준코노래타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342,820,000원(VAT포함)(264㎡ / 80평 기준)]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16,500,000			
가맹비	11,000,000	계약 체결일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오픈에 소요된 실제 비용(가입비, 시스템 제공, 오픈 지원)
교육비	5,500,000	계약 체결일	교육 시작 1일 이전 계약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000			
보증금	3,000,000	계약 체결일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가맹점 운영 중 미지급금이 증가하여 보증금만으로 담보하기에 부족한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19,500,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원, 부가세 포함)
합계	19,500,000
가맹비	11,000,000
교육비	5,500,000
보증금	3,00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264.46㎡(80평) 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324,820,000				80평 기준
인테리어	가맹본부	200,650,000	2,508,125	- 착수금(30%) : 공사시작 2일 전 - 중도금(40%) : 착수금 입금 후 15일 이내 - 잔금(30%) : 공사완료 후 집기 입고 2일 전	공사 전 계약취소	
기기 및 설비	가맹본부	100,870,000		- 착수금(30%) : 공사시작 2일 전 - 중도금(40%) : 착수금 입금 후 15일 이내 - 잔금(30%) : 공사완료 후 집기 입고 2일 전	설치 전 계약취소	
간판	자율(미지정)	변동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집기비품	가맹본부	20,000,000		- 착수금(30%) : 공사시작 2일 전 - 중도금(40%) : 착수금 입금 후 15일 이내 - 잔금(30%) : 공사완료 후 집기 입고 2일 전	입고 전 계약취소	
인쇄 및 소품	가맹본부	무상지원		해당없음	개점 전 계약취소	
초도상품	협력업체	3,300,000		주문 후 차주 월요일	상품 미 공급 시	
그 밖에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쇼케이스냉장고, 생맥주기기, 가스공사, 전기증설, 철거공사, 외부공사, 계단공사 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인테리어 및 내·외부 시설에 대해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

사가 정한 설계도면과 표준 SI 매뉴얼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감리비 및 도면비로 60,000,000원(80평 미만 시 50,000,000원)을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도면만 제공을 원하는 경우 도면비로 30,000,000원을 공사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20세 이상일 것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준코노래타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가맹금의 분납

☞ 귀하께서는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가맹금을 분납하여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부담금에 대한 세부 분

담기준은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료	가맹본부	실비 (필요시)	광고 실시 전	광고 실시 전	전국광고를 시행할 경우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광고 시행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수시교육은 로열티에 포함, 특별교육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교육 개시 후에는 소멸성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월정로열티	가맹본부	매출액의 3.3% (vat포함)	매월 1일	반환불가	후불제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가맹점사업자 자율 지정 업체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5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4%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월정로열티)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 및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지도 및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재고 관리	효율적 사업경영을 위한 재고 상태 조사	수시	문의 : 가맹사업본부 (070-4543-9293)
회계 처리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 매출 증진을 위한 회계 조사	수시	문의 : 가맹사업본부 (070-4543-9293)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준코노래타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은 없습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경업금지 기간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합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미납금을 즉시 완제하여야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호 및 상표, 가맹본부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기타 식자재,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개봉하지 않고 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반환가격을 결정합니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도면, 운영매뉴얼 등)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의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과 구별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를 표상하는 영업표지를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⑤ 전항의 철거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

담합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무단 상표 사용기간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준코노래타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준코노래타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준코노래타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2) 당사가 [준코노레타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2]	당사에서 지정한 메뉴를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가맹점 및 상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메뉴제공)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는 유흥주점	준코 노래타운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식품위생법 상 유흥주점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점포 (유흥주점 허가 취득은 여러 관련 법률에 의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타 업종에 비교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업지역은 점포내로 한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준코노래타운’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준코노래타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의 영업지역은 1건물 당 1개 점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건물 내에 영업가능한 점포가 있고, 이를 운영을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운영 희망 여부를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여건 상 운영에 대한 수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49%	51%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준코노래타운]의 최초 가맹계약기간,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제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준코노래타운]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제39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의 변경 사항(명의변경, 점포 규모 및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및 영업표지를 훼손·변경하거나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자체 법인명의 등 법적인 명칭과 기타 통용되는 명칭에 가맹본부가 현재 사용 중 이거나 신청 중인 명칭, 또는 변경된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변경된 경우 가맹본부의 요청에 따른 처분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설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및 교육비용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을 위한 제반 인·허가의 취득 및 갱신을 해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비, 월정로열티, 상품대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업종을 영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 관리를 위해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영업방침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공급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및 가맹본부의 품질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에 의한 광고비 부담 및 판촉활동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직원이 영업활동을 위해 도우미 혹은 접대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손님에게 소개하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9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

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계약 해지 사유 ②]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가맹계약서 제49조 제2항)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 전대, 위탁 경영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하 “양도 등”이라 한다)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양도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잔존 계약기간에 따른 가맹비를 양수자와 정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금액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양도 등”에 앞서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에게 먼저 양도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④ 가맹본부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양수인이 본 조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본부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⑥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⑦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인의 가맹계약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가맹본부에 통지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사망 시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운영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44조 제1항)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맹계약서 제44조 제2항)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리 경영시킬 수 없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하에 실시해야 하며, 대리 경영인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25조 제2항)
업무위탁	불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준코노래타운]과 동일한 업종의 운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 일반인에게 노래연습기기를 설치하고 주류 및 안주를 판매·제공하는 업종 ○ 동일 업종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12시간 이상	365일 연중 무휴 영업	문의: 가맹사업본부 (070-4543-9293)

-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루 기본 12시간 이상, 연중무휴 개점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가맹본부에게 휴업하기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사유가 정당할 시 가맹본부는 승인하도록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운영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3명(80평 기준)	자율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당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취급 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조리 및 위생상태, 서비스 상태, 회계장부 열람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당사가 가맹점의 점검이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운영시간 중 언제든지 귀하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된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사업장소, 대표자 및 점포관리자 인적 사항 등 사업자 등록상 또는 영업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준코노래타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중 가맹점 총매출액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및 전국적 이벤트 행사 광고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개별행사	판촉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계획, 주관하는 판 촉행사와 가맹본부가 배포한 상품교환권과 무료구매권 및 할인권 등(이하 "쿠폰" 이라 한다)에 대한 판매, 사용 등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 본부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회수한 쿠폰에 대한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에 합의한 바에 의하여 정당하게 시행하도록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전단, 리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준코 노래타운』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 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7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231㎡ 기준)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문의/ 상담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 담당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2일	없음
점포임대	-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 입지 지역분석 및 점포 확정	15일	점포 임대비용
최종협의	- 가맹점 개설승인 - 가맹계약서 제공	1일	없음
가맹계약	- 가맹계약 체결 - 가맹비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째부터 가능	가맹비 11,000,000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입고	45일	인테리어 200,650,000 기기및설비 100,870,000 집기비품 20,000,000 초도상품 3,300,00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매장 인테리어공사시 진행)	5일	
오픈	- 초도상품 입고 및 가맹점 오픈	1일	없음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 사업자의 개인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정보공개서 [27]쪽에 기재된 가맹금을 [별첨3]의 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자영업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의 개설 또는 운영에 있어 특별하게 정해진 지원제도가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 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 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본부 (070-4543-9 293)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 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가맹사업본부 (070-4543-9 293)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준코노래타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을 제공 또는 알선을 주선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준코노래타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교육	아래 참조	기초교육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개점 전	필수 교육
		실전교육(현장교육)		
정기교육	신메뉴 조리교육	현장실습교육 집단강의	교육실시 전	필수 교육
특별교육	변동	집단강의	교육실시 전	가맹본부가 필요시 실시

※ 개점 전 교육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차	오픈 준비 교육(5일)	내용	장소
1일차	조리 이론 교육 (4H)	조리 기본 이론 교육	본사 교육장
	서비스 이론 교육(2H)	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이론 교육	
	서비스 실습 교육(2H)	고객 접대에 대한 실습 교육	
2일차	세무 및 법무 교육 (2H)	점포 운영 상 필요한 세법 및 법률에 관한 교육	본사 교육장
	종업원 관리 교육(2H)	점포 직원 관리에 관한 교육	
	인테리어 보수 교육 (2H)	점포 운영 상 필요한 인테리어 보수에 관한 교육	
	주문, 발주 교육(2H)	상품 주문 및 발주에 관한 교육	
3일차	조리 실습 교육(8H)	판매 상품 및 메뉴 조리에 관한 실습 교육	매장
4~5일차	현장 실전 교육(16H)	매장 운영 현장을 통한 운영 전반에 관한 실전 교육	매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준코노래타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5일(40시간)	5,000,000원	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로열티에 포함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특별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협약 내용에 따름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불가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1)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 개점이 불가능 하며,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당사는 개점승인 거부 또는 보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2)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점포평가에 반영하여 재계약 거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3)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나 현장직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No.	지역	매장명	주소
1	서울	강남1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50, 지하1층(서초동, 대원빌딩)
2	서울	강남2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9길 11, 지하1층(서초동, 삼미빌딩)
3	부산	경성대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7번길 9(대연동, 중앙프라자)
4	경기	광명1호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2,1층(철산동,지하)
5	광주	광주첨단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01번길 51, 2층(쌍암동)
6	경북	구미인동점	경상북도구미시인동가산로9-3 501,502호 (황상동)
7	전북	군산수송점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5길 6, 2~4층(수송동)
8	서울	길동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35, 301호(길동)
9	경남	김해내외점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64, 4층(내동)
10	경남	김해인제대점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170번길 9-26, 지하/지상2층층(어방동, 대영빌딩)
11	부산	남포점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84번길 5, 5층(남포동6가)
12	부산	남포뮤직점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3, 3층(남포동6가)
13	대구	대구성서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서로 7, 4층(이곡동)
14	대전	대전은행점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지하1층(은행동, 한솔빌딩)
15	경기	동두천점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17, 4층(지행동, 현대프라자)
16	부산	동래명륜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34, 4층(명륜동)
17	대구	동성로뮤직2호점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4길 28-7, 2,3층(삼덕동1가)
18	경남	마산합성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 13, 2층(합성동)
19	경기	부천중동1호점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179, 지하1층(중동, 대신프라자)
20	경기	부천중동2호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54번길 81, 지하1층(중동, 월드코아)
21	경기	부천중동3호점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291번길 16(중동, 대진빌딩)
22	서울	사당1호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941, 지하1층(남현동, 지산빌딩)
23	서울	사당2호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1길 47, 지하1층 01호(남현동)
24	경기	서현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10번길 14, 지하1층 5호(서현동, 유성트윈프라자2차)
25	경기	송탄점	경기도 평택시 관광특구로 18, 지하1층(서정동)
26	경기	수원역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51, 2층 202호(매산로2가, 에스알프라자23차)
27	서울	신림1호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44, 지하1층(신림동, SK허브그린)
28	서울	신림2호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9길 14, 지하1,지하2층(신림동, 민속순대타운)
29	서울	신사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3(신사동, 삼화빌딩)
30	서울	신천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12길 4-25, 지하1층(잠실동)
31	경북	안동옥동점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169, 3층(옥동, 대구경북능금농협안동지점)

32	경기	야탑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69번길 24-8(야탑동, 분당종합상가)
33	서울	역삼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78길 12, 지하1층(역삼동)
34	부산	연산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46, 2층(연산동)
35	서울	연세대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4길 7, 지하1층(창천동)
36	서울	영등포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48, 지하1층(영등포동3가, 대흥빌딩)
37	경기	오산점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80-17, 7층(오산동, 유길빌딩)
38	충북	오창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51-6, 502호(태웅프라자)
39	경북	포항죽도점	경상북도포항시북구중흥로129,1층 (죽도동)
40	인천	인천주안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104번길 8, 2,3층(주안동, 주안동 n-JOY 상가)
41	제주	제주시청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32길 4, 1,2,3층(이도이동)
42	제주	제주연동1호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9길 18(연동, 지하)
43	제주	제주연동3호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7길 35, 5층(연동)
44	제주	제주일도이동2호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02, 4층(일도이동)
45	제주	제주중문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179(중문동)
46	서울	종각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3-8, 1층(인사동)
47	경남	진해용원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20, 5층(용원동, 새롬빌딩)
48	서울	창동점	서울특별시도봉구노해로381, 지하1층(창동)
49	경남	창원봉곡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61번길 6-30, 4층(봉곡동, 우정프라자)
50	충남	천안불당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21, 2층 202,203호(불당동, 탑필드프라자빌딩)
51	충남	천안신부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11길 25, 3층(신부동, 동천빌딩)
52	서울	천호로데오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27, 지하1층(천호동, 동원천호빌딩)
53	충북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집대로72번길 34, 3,4층(복대동)
54	충북	충주연수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상가길 29, 지하1층3층(연수동)
55	서울	사당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1길 47, 지하1층(남현동)
56	충북	충주연수점	충청북도충주시연수상가길29(연수동)
57	경남	통영점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6길 54, 4층(복신동, 일경빌딩)
58	경기	평택점	경기도 평택시 평택2로 6(평택동)
59	경북	포항죽도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29, 1,2,3층(죽도동)
60	부산	해운대우동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 20, 8,9,10층(우동)
61	부산	해운대좌동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80번길 22, 3층 301호(좌동, 해동빌딩)
62	경기	화정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6, 8층(화정동, 우정프라자)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8년 4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2-409-300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junco.alltheway.kr]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공급상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메뉴별 권장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3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 5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 보관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아울러,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인)	수령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	-----------------------------

------(절취선)-----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본부 보관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아울러,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인)	수령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	-----------------------------